

##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오산시의회의장

###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은경 의원 발의]

#### 1. 제안이유

-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오산시차세대위원회를 오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하고, 용어의 정의와 위원회 출석위원의 실비 변상에 관한 내용 등 일부 조문을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가. 「청소년 기본법」의 내용을 단순 반복해 자치법규 입법경제상 실익이 없는 용어의 정의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르도록 함(안 제2조).
- 나.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4조에서

- 위탁사무에 대해 해마다 한차례 이상 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므로 감사를 담당부서의 지도·점검으로 변경함(안 제18조).
- 다. 청소년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위한 ‘오산시차세대위원회’를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오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함(안 제5장 제목,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제50조제3항).
- 라. 위원회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여비 지급은 개별 조례에 규정이 없더라도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규정할 실익이 없기에 해당 조문을 삭제함(안 제40조제1항).
- 마.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 폐지(2020.12.11.)에 따라 오산시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선발하는 해외견학 대상 청소년 중 관련 내용을 삭제함(안 제50조제3항).
- 바. 준용규정 중 「오산시 재무회계 규칙」이 전부개정(2020.9.28.)되어 개정된 명칭인 「오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안 제55조).

### 3. 조례안 : 붙임

###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년 3월 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 명 :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 의 건 | 비 고 |
|--------|---------|----|-----|-----|
|        | 찬성      | 반대 |     |     |
|        |         |    |     |     |

#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은경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제8-455호 |
|----------|---------|

발의년월일 : 2021년 2월 25일

발의의원 : 한은경 의원

찬성의원 : 김명철, 이상복, 성길용,  
이성혁 의원

## □ 제안이유

-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오산시차세대위원회를 오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하고, 용어의 정의와 위원회 출석위원의 실비 변상에 관한 내용 등 일부 조문을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

## □ 주요골자

- 가. 「청소년 기본법」의 내용을 단순 반복해 자치법규 입법경제상 실익이 없는 용어의 정의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르도록 함(안 제2조).
- 나.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4조에서 위탁사무에 대해 해마다 한차례 이상 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므로 감사를 담당부서의 지도·점검으로 변경함(안 제18조).
- 다. 청소년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위한 ‘오산시차세대위원회’를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오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함(안 제5장 제목,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제50조제3항).

- 라. 위원회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여비 지급은 개별 조례에 규정이 없더라도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규정할 실익이 없기에 해당 조문을 삭제함(안 제40조제1항).
- 마.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 폐지(2020.12.11.)에 따라 오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선발하는 해외견학 대상 청소년 중 관련 내용을 삭제함(안 제50조제3항).
- 바. 준용규정 중 「오산시 재무회계 규칙」이 전부개정(2020.9.28.)되어 개정된 명칭인 「오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안 제55조).

##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5조의2, 제17조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4조
  -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7조 중 “제2조제4호”를 “법 제3조제6호”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감사를”을 “지도·점검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자는”을 “수탁자는 지도·점검,”으로, “시장은 감사 및”을 “시장은 지도·점검, 감사 및”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오산시차세대위원회”를 “오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설치)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오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청소년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세대위원회”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위원회”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차세대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참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위원회”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차세대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대표하며 청소년참여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참여위원회”로, 같은 항 중 “과반수 의”를 “과반수의”로 한다.

제4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종전의 제2항) 중 “차세대위원”을 “청소년참여위원”으로 한다.

제50조제3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오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제55조 중 “「오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오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u>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u>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u></p> <p><u>2. “청소년 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유익하도록 개선함은 물론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u></p> <p><u>3. “청소년 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u></p> <p><u>4.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설치</u></p> |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u></p> |

되는 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  
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  
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  
행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  
한다.

제7조(청소년시설 설치) 시장은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청소  
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  
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  
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  
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오산시차세대위원회

제34조(설치) 시장은 수요자 중심  
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  
여 청소년으로만 구성되는 오산  
시차세대위원회(이하 “차세대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청소년시설 설치) -----  
법 제3조제6호-----  
-----.

제18조(지도감독) ① -----  
-----  
----- 지도·점검  
을 -----  
-----  
-----.

② 수탁자는 지도·점검, ----  
----- 시장은 지도·점  
검, 감사 및 -----  
-----.

제5장 오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

제34조(설치) 시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  
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  
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오  
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                                                                                                                                 |                                                                    |
|---------------------------------------------------------------------------------------------------------------------------------|--------------------------------------------------------------------|
|                                                                                                                                 | “ <u>청소년참여위원회</u> ”라 한다)를<br>둔다.                                   |
| 제35조(기능) <u>차세대위원회</u> 는 다<br>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br>의 자문에 응답한다.                                                                  | 제35조(기능) <u>청소년참여위원회</u> -<br>-----<br>-----.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 제36조(구성) ① <u>위원회</u> 는 위원장<br>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br>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br>다만, 위원 중 어느 한 성(性)이<br>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br>하여야 한다. | 제36조(구성) ① <u>청소년참여위원<br/>회</u> -----<br>-----.<br>-----<br>-----. |
| ② <u>차세대위원회</u> 의 위원은 오산<br>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br>소년 중에서 학교장, 청소년 관<br>련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br>및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사<br>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 ② <u>청소년참여위원회</u> -----<br>-----<br>-----<br>-----<br>-----.       |
| ③ <u>차세대위원회</u> 의 위원장과 부<br>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br>다.                                                                               | ③ <u>청소년참여위원회</u> -----<br>-----<br>-----.                         |
| ④ <u>위원회</u> 의 원활한 사무를 처<br>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br>되, 간사는 청소년관련 업무담<br>당주사로 한다.                                                    | ④ <u>청소년참여위원회</u> -----<br>-----<br>-----.                         |
| 제37조(임기) ① <u>위원회</u> 위원의                                                                                                       | 제37조(임기) ① <u>청소년참여위원</u>                                          |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  
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  
원장은 차세대위원회를 대표하  
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생 략)

제3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  
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  
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사업비 등) ① 청소년육성  
위원회 및 차세대위원회에 출석  
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당·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  
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차세대위원이 제35조  
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회 -----  
-----.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대표  
하며 청소년참여위원회----.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회의) ① 청소년참여위원  
회-----  
-----  
-----  
-----  
-----.

② 청소년참여위원회-----  
-----  
----- 과반수의 -----  
-----.

제40조(사업비 등) <삭 제>

----- 청소년참여위원-----  
-----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기회의  
제공·연찬회·표창 등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  
원) ①·② (생략)

③ 시장은 해외견학 대상 청소  
년을 오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  
에서 선발하고,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  
에 따라 수상한 청소년

6. 오산시차세대위원

7.·8. (생략)

제5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  
년 기본법」·「청소년 보호  
법」·「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  
본 조례」·「오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  
-----  
-----.

제50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  
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오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  
원

7.·8. (현행과 같음)

제55조(준용) -----  
-----  
-----  
-----  
-----  
-----  
-----  
-----  
----- 「오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참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③ 참여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4조(사무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감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대하여 제23조제3항에 따라 적절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임·직원에게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각종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